

Jisung Horizon Newsletter

March 2010 Vol.3. No.18

01 법률칼럼

- IPO와 로펌의 역할 (이행규 변호사)

03 기획특집

-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배동희 공인노무사)

09 열려라 중국

- 중국 주식시장의 상장요건 (최정식 변호사 · 상해지사 지사장)

13 Vietnam LIVE!

-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 보장 방안 (변희경 변호사 · 베트남 현지법인 법인장)

15 주목! 이 판례

- 산지전용지 복구발생요건에 대한 직권심리 사건

19 최신법령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등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 확대 등
-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21 (안내)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

24 업무동향

- 미국의 퀘일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 프랑스 금융기관들이 제기한 워런트소송에서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항소대리인으로 선정
- 미래에셋증권 및 대신증권 SPAC 설립 법률자문 제공
- 인크레스코(주)를 대리하여 중학지구 매도거래 종결 업무 수행
- 현대엠코(주)의 캄보디아 프놈펜 오피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법률자문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자 Pool에 선정

31 지평지성 단신

- 지평지성,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아이티 재난 구호 성금 전달
- 최승수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 라이선싱 계약법' 강의
- 이은우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 위원회 제도기획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 이행규, 채희석, 이은영 변호사, BFL 2010년 1월 호에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의 설립 및 등록 관련 실무상 제문제' 공동 기고

34 영입인사

- 김영규 변호사
- 김태형 변호사
- 장품 변호사
- 김준환 변호사
- 이유허 변호사
- 음지현 자문위원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지평지성
JISUNG HORIZON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8, 11층
TEL: 02-6050-1600 FAX: 02-6050-1700 <http://www.js-horizon.com> E-mail: master@js-horizon.com
Copyright © JISUNG HORIZON Attorneys at Law All rights Reserved.

(법률칼럼)

IPO와 로펌의 역할



이행규 변호사

2010년 3월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11개(중국계 10개, 일본기업 1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미국기업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을 비롯하여 올해도 중국계, 일본계, 영국계, 베트남계, 인도네시아계 등 다양한 국가의 외국기업들이 한국거래소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외국기업 국내상장 과정에서 한국 로펌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사실 순수한 국내 IPO 과정에서는 국내 변호사들의 역할이 극히 미미했습니다. 대상회사 실사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예비상장심사청구서 작성, 증권신고서 작성 등 변호사들이 참여가 필요한 영역을 대부분 주관회사에서 수행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시장과는 대조적입니다(미국의 경우 IPO와 관련된 모든 documentation을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로펌들의 큰 수익원입니다).

기존에 국내 IPO 시장에 변호사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각종 청구서나 신고서 등에 변호사의 법률의견이 의무적으로 첨부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사도 임의적입니다. 이러다 보니 발행회사가 자연스레 비싼 변호사 비용을 들여가며 IPO를 준비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외국기업의 국내상장 시에 한국 로펌의 개입이 필수적인 것은 국내 IPO와 다른 사정 때문입니다. 즉, 외국기업의 경우 당해 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현지 로펌과 한국 로펌의 법률의견 제공이 규정상 강제됩니다. 이러한 법률의견 발급을 위해 발행회사나 매출주주에 대한 실사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당해 국가의 법령에 대한 기재, 정관의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한국 로펌의 주도 아래 현지 로펌의 조력이 있어야만 준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회사도 국내와 달리 당해 외국기업의 설립 준거법이나 외환, 조세제도 등에 대한 리스크를 판단하고 줄이기 위해 로펌들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와 법체계가 다른 외국기업을 한국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쟁점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는 법률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한국 로펌들에게 외국기업 국내상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미국이나 유럽 증시에 상장한 이후에도 상장유지를 위한 다양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것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도 공시나 증자 등 상장 유지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상장 시 국내 로펌이 홍콩의 대형 국제 로펌의 local counsel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고 외국 로펌이 딜을 이끌었던 것과 정반대로 외국기업 한국상장시에는 국내 로펌이 외국 로펌을 sub-counsel로 두고 IP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들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수년 전부터 각고의 노력을 해 온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로펌들과 회계법인들은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외국기업이 한국거래소를 찾게 하여 한국 자본시장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한국 로펌들은 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JS-Horizon

(기획특집)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배동희 공인노무사

I. 들어가며

2010년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호에서는 그 중 올해 7월로 시행이 임박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제외한 노조전임자 무급'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내년 7월에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법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을 정도로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입니다. 이는 공무원·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의 변화와 갈등과 더불어 2010년도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1.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2011년 7월 1일부터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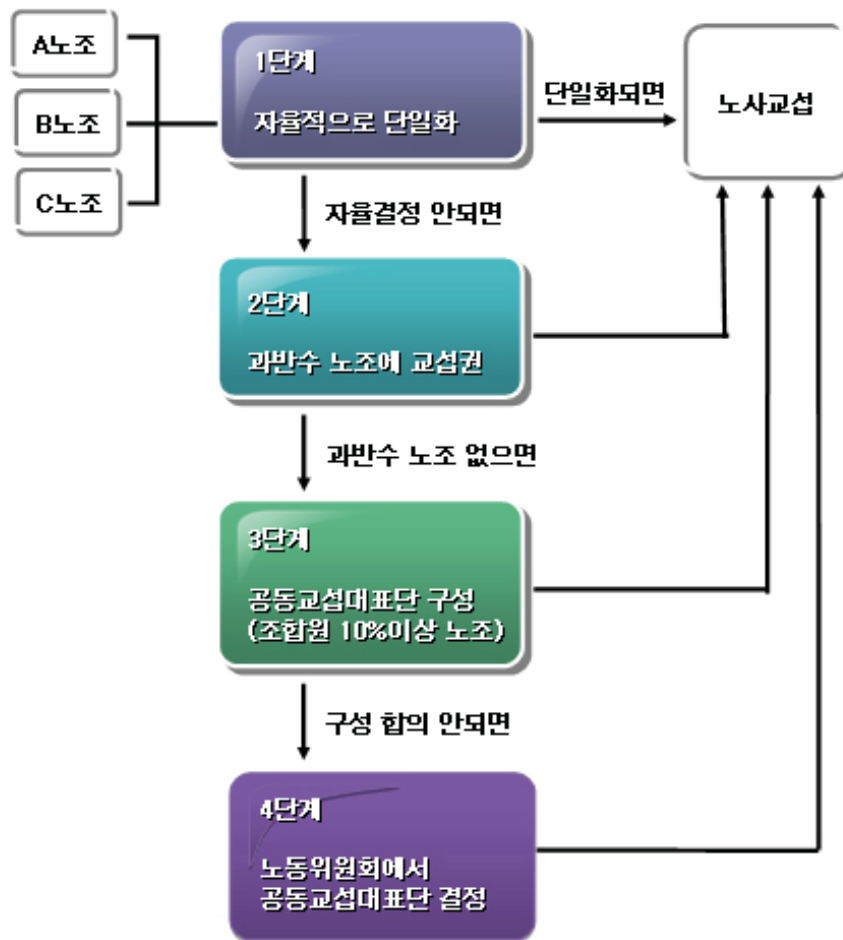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의 허용 문제는 노조법 본문에서 노조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존 부칙에서 제한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금지의 유예기

간을 경과하도록 두면 복수노조 설립은 전면적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으면 복수노조 모두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이는 이론상 단체교섭권의 헌법상 보장 취지에 충실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개정 노조법은 과반수 노조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도입하였고, 사업 단위 복수노조의 설립 금지를 2011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였습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금지를 다시 1년 6개월 유예한 것입니다.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부터 교섭을 요구 할 수 있고 이러한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사용자의 공고(7일) 등의 절차를 거쳐 교섭참여 노조가 확정됩니다.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는 “자율결정 → 과반수 노조 교섭대표 → 공동교섭대표단(비례대표제) → 노동위원회 결정”의 단계를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형식상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논의되던 노사 자율 교섭, 과반수 대표제, 비례대표제가 모두 개정법에 포함된 것입니다.

1) 노조 및 사용자간 자율결정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간 내(참여노조 확정 후 14일 이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무방합니다.

2)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

참여노조 확정 후 14일 이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개별교섭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됩니다. 여기에는 절대 과반수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소수 노조간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공동교섭대표단 구성(비례대표제 방식)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즉, 최소 10%이상 조합원이 있어야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 가능하고, 이때 대표단 구성 방법은 노조간 자율 결정합니다.

4)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미합의시 노동위원회 결정

공동교섭대표단의 자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

구사실,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중재 규정(노조법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결국 노조 내부에서 자율 결정이 안 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강제 결정하고, 중재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상 이의 제기할 수 없고 수용해야 합니다.

3. 기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내용

1) 교섭단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창구단일화 단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초기업단위 노조 및 산별교섭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야기한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분리결정을 둘러싸고 노동위원회의 결정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장기간 교섭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 의무 부과합니다. 즉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 의무의 내용이 모호하고, 공정 의무 위반 시 제재방안의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소수노조 보호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3) 쟁의행위찬반투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각각의 과반수 찬성은 아님)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4)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인수, 합병, 산별노조 등의 사유로 이미 복수노조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의 복수노조 관련 규정을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산별노조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유예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였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개정 법률의 내용은 산별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에게 창구 단일화 시한을 1년 연장(2012년 7월1일)한 것이며 산별노조라 하더라도 2009년 12월 31일 당시에 복수노조가 아니었다면 2011년 7월1일 이후 새로운 노조 결성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편 기존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단위 창구단일화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어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한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Ⅲ. 맺으며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기본권의 자연권성(自然權性)으로 헌법상의 단결권에 부합하는 당연한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나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의해 복수노조 금지가 도입되었고, 이후 1996년 말 개정으로 본문에서 노조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되, 부칙에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상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하여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의 문제입니다. 이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미달

소수노조(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10%미만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그 결과 단결권조차 형해화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10%미만 소수노조는 단체행동권조차도 박탈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기타 여러 가지 법리적 쟁점 및 입법적 미비점 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노조법이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법리적 쟁점에 대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에 맞춰 각 기업이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기업과 개별 사업장에서는 여러 경우와 변수에 대한 보완책과 대응 방안을 통해 노사관계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JS-Horizon

(열려라 중국)

중국 주식시장의 상장요건



최정식 변호사 ·
상해지사 지사장

중국의 경제는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난 해 8%대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쳐 약 4조위엔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중국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그 결과 중국 경제가 불황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 기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10월경 중국판 나스닥이라 할 수 있는 창업판이 개설된 이래 중국 내에서 유망한 과학기술기업들이 속속들이 상장되어 2010년 2월말 기준으로 58개 기업이 이미 상장되었고 4개 기업이 상장 심사 중에 있습니다. 창업판 개설 당시 중국 내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창업판이 과연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전히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과열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가운데 새로 상장하기 위해 대기한 기업만도 수백여 기업에 이른다고 하니 그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베이징 과학기술특화지역의 300개 기업이 창업판 상장을 위해 육성되고 있고, 중국 전역의 1만 5천여 과학기술기업 중 창업판 상장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2천여 개에 이른다고 하니 창업판의 잠재력은 대단합니다. 이하에서는 중국 주식 시장에서 기존 주판, 중소기업판과 대비하여 창업판의 상장 요건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주판	중소기업판	창업판
발행인 (상장회사)	법에 의해 설립하고 적법하게 존속하는 주식유한회사		
경영연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서부터 3년 이상 연속 경영하여야 하나 국무원이 비준한 경우 예외로 함(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장부상 순자산을 전부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변경하였다면 유한회사의 존속시간을 주식회사 경영연한에 산입할 수 있음)	3년 이상 연속경영(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한 경우, 장부상 순자산을 전부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변경하였다면 유한회사의 존속시간을 주식회사 경영연한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윤요건	<p>최근 3개 회계연도 순이익이 인민폐 누계 3,000 만 위엔 이상, 순이익은 비경상 손익을 공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의해 산정함</p> <p>최근 3년간 회계연도 경영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인민폐5,000만 위엔 이상이거나 최근 3개 회계연도의 영업수익이 인민폐 3억 위엔 이상 이여야 함</p> <p>최근 1기간 결손전보가 없어야 함</p>	<p>최근 2년간 연속 이익을 내야 하고 최근 2년간 순이익이 인민폐 1,000만 위엔 이상 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함. 혹은 최근 1년간 연속 이익을 내고 최근 1년 영업수입이 인민폐 5,000만 위엔 이상 이며 최근 2년의 영업수입 성장률이 30% 이상 이여야 함</p> <p>순이익은 비경상 손익을 공제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에 의해 산정함(주 : 위 요건은 선택 적용함)</p>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자산요건	최근 1기말 무형자산(토지사용권, 수산 양식권 및 광물자원채굴권 등 제외)이 순자산의 20% 이하이어야 함	최근 1기말 순자산이 2,000만 위엔 이상이고 결손보전이 없어야 함
자본요건	발행 전 주식 자본 총액이 인민폐 3,000 만 위엔 이상 이어야 함 발행 후 주식 자본 총액이 인민폐 5,000 만 위엔 이상 이어야 함	발행 후 주식 자본 총액이 인민폐 3,000 만 위엔 이상 이어야 함
주요 경영 업무 요구	최근 3년 간 주요 경영업무에 중대한 변화가 없어야 함	발행인은 주요 경영업무가 단일하고, 법률, 행정법규와 회사 정관, 국가 산업정책 및 환경보호 정책에 부합하여야 함. 최근 2년 간 중대한 변화가 없어야 함
이사,관리자	최근 3년 간 중대한 변화가 없어야 함	최근 2년 간 중대한 변화가 없어야 함
실질지배인	최근 3년 간 실질지배인이 변경이 없어야 함	최근 2년 간 실질지배인이 변경이 없어야 함
동업경쟁	발행인과 발행인을 지배하는 지배주주, 실질지배인 및 발행인의 지배를 받는 지배회사간 업무상 동업 경쟁이 존재하지 아니함	발행인과 발행인을 지배하는 지배주주, 실질지배인 및 발행인의 지배를 받는 지배회사간 업무상 동업 경쟁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사 독립성에 큰 영향을 주는 불공정한 거래가 없어야 함
관련거래	발행인은 발행인을 지배하는 지배	불공정한 관련거래가 없어야 함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p>주주, 실질지배인 및 발행인의 지배를 받는 지배회사간 불공정한 거래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관련 거래가격이 공정하여야 하며 관련 거래를 통하여 이윤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됨</p>	
--	---	--

JS-Horizon

(Vietnam LIVE!)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 보장 방안



변희경 변호사 ·
베트남 현지법인 법인장

베트남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어 감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에 신규 투자할 경우 단독으로 투자할 수도 있으나, 법령상 제한이나 현지 사정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현지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현지 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할 경우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어떻게 합작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합작회사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될 수 있는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총회에서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기업법은 사원총회와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에 적용되는 일반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일반결의사항은 참석한 사원 또는 주주의 65%, 특별결의사항의 경우 참석한 사원 또는 주주의 75%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상으로는 75%의 지분을 확보하지 않는 한 완전한 경영권 확보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분야에 따라서는 해당 영업을 수행하는 베트남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이 49%, 50% 또는 51%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위 법령상 제한을 극복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베트남은 WTO에 가입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회사 정관에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65%-75% 결의요건에도 불구하고, 51% 등의 단순 다수결로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기업법에는 반드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정한 사항이라도 회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내의 다른 의사결정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외국인 투자지분의 제한은 해당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때 그와 같은 법문에는 정관상 자본금(Charter Capital)에 대한 제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투입자본 측면에서만 외국인 지분제한이 규정되어 있고, 특별히 의결권 또는 배당권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의결권 우선주 또는 배당 우선주를 발행함으로써 자본투입비율과는 달리 의결권 비율이나 배당의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아직 그 유효성이 공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실무상 왕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지분권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권자 사이에서 정관과 배치되는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하였을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치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도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베트남에 합작투자를 설립하시고자 하실 경우에는 회사 경영권 지배방안과 관련하여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JS-Horizon

(주목! 이 판례)

산지전용지 복구발생요건에 대한 직권심리 사건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들은 2005. 6.경 '창고부지조성'을 전용목적으로 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 습니다.

나. 원고들은 허가받은 전용기간 내에 창고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전용목 적이 창고조성으로 변경된 기간연장허가를 받았습니다.

다. 원고들은 창고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복구설계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복구설계승인을 받으려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나 목적사업이 완료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창고건물 건축이 아니고 부지조성 인데 부지조성공사는 이미 완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완 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소 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1심 및 2심의 판단

가.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산지전용목적용을 창고부지조성으로 하여 산지전용허 가신청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그 기간연장허가를 신청 할 때도 전용목적용을 창고부지조성으로 특정하였는데도, 피고가 기간 연장허가를 하 면서 임의로 목적용을 창고조성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산지전

용허가의 목적이 창고부지조성이 아닌 창고조성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초 산지전용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이 건축물 건축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건을 부가하였다고 하여 그 목적사업이 창고부지조성이 아닌 창고건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산지전용목적사업은 창고부지조성이고, 이는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나. 2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급한 산지전용허가증의 산지전용목적란에 '창고부지조성'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에 피고는 '창고조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산지전용을 허가하였고 원고들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은 창고조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하면서 목적사업인 건축물 건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허가조건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자체를 취소할 권한이 있고, 그와 같은 권한 행사에 앞서 허가조건이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사유에는 이와 같은 취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리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는데도 단지 당사자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이 없는 판결을 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26조의 규정과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43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전제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에게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그 의무 이행을 위한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에 그 목적사업인 창고건축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허가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만으로 원고들에게 산지복구의무가 발생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 허가조건이 이행, 즉 목적사업의 완료를 촉구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불

승인할 수는 없으며, 피고가 위 허가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검토

대법원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이 산지전용기간의 만료와 함께 원고들이 복구설계승인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로 복구설계승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필요한 직권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당해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산지전용기간의 만료만으로도 복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논점에 대하여 당사자도 달리 주장을 하지 않았고 1심 및 2심 법원도 간과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복구설계승인신청불승인처분 취소](#)

JS-Horizon

(최신법령)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등

: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5. 5. 시행)

1. 종래 분산되어 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전자정부를 구현·발전시킴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 법 제36조부터 제44조를 개정하여 각급 행정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45조부터 제63조를 개정하여 정보통신망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전자정부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여 전자정부의 운영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5. 5. 시행\)](#)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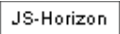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035호, 2010. 2. 18. 시행)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연결법인에 대한 연결납세방식의 요건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94조 제8항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법인세 공제대상 세액으로 하였습니다.

3. 시행령 제94조 제10항을 개정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외국손회사의 요건을 지분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4. 시행령 제120조의12 제3항을 신설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다운로드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035호, 2010. 2. 18. 시행\)](#)

3.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040호, 2010. 2. 18. 시행)

1. 시행령 제34조의2를 개정하여 특정외국법인에 대하여 유보소득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소득기준을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시행령 제36조의3을 개정하여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이 합산과세되지 않기 위한 자회사 요건 중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소유 요건을 40퍼센트 이상 소유 요건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진출기업, 조세회피목적 없이 해외에 진출하는 기간산업 및 자원개발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040호, 2010. 2. 18. 시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안내)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

바로가기 : <http://www.js-horizon.com/event/100415/index.html>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출범 기념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
■ 일시 : 2010. 4. 15. (목) 오전 9시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최 : 법무법인 지평지성

세미나 참가 신청

초대의 글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출범을 기념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평지성은 그동안 쌓아온 해외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법률 자문 및 조세, 분쟁처리는 물론 해외투자 컨설팅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해드리고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중국, 아세안, 호주, 러시아·중앙아시아, 일본, 북한 등을 비롯하여 중남미, 인도, 중동, 아프리카, 북미 및 유럽 등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에서는 지평지성의 5개 지역 해외지사장들을 포함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 지역전문변호사들과 M&A, 금융 전문변호사를 및 회계사가 대거 참석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최신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해외국가별 법제와 투자동향 등 유익한 정보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세미나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십시오. 초청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00 - 09:20	등록 및 접수
09:20 - 09:30	개회사
SESSION 1 09:30 - 11:00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시장개방의 주요 내용 / 변희경 변호사 (호치민 지사장) ■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제 개관 및 베트남 투자시 주요 이슈와 유의점 / Bui Tran Dang Khoa 베트남변호사 (호치민 지사), 한승혁 호주변호사 ■ 베트남 부동산 개발 및 하노이 지역 투자 / 김주현 변호사 (하노이 지사장)
11:00 - 11:10	휴식
SESSION 2 11:10 - 12:10	캄보디아, 라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투자전략 / 유정훈 변호사 (캄보디아 지사장) ■ 라오스 외국인투자 / Siri Sayavong 변호사 (라오스 합작법인 JSH-LLC 매니징 파트너)
12:10 - 13:30	점심
SESSION 3 13:30 - 15:10	해외투자의 조세문제, Cross-border M&A, 해외 Project Fi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의 조세문제 / 구상수 공인회계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해외업무 및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양영태 대표변호사 ■ Cross-border M&A / 김상준 변호사 ■ 해외 Project Finance / 이행규 변호사
15:10 - 15:30	휴식
SESSION 4 15:30 - 17:30	필리핀,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외국인투자법제 개관 및 부동산개발 / 김혜라 변호사 ■ 중국 시장환경의 변화와 투자전략 / 최정식 변호사 (상해지사장) ■ 중국에서의 분쟁해결 / 김영규 변호사 ■ 러시아·중앙아시아의 외국인투자 및 건설·부동산개발 / 류혜정 변호사
17:30	폐회

※각 세션이 끝난 후 30분간 당해 세션 주제 관련 상담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가 신청

안내

- 초청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개 기업당 참가자를 2-3명으로 제한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비는 무료이며 간단한 다과가 제공됩니다.
- 상공회의소 빌딩내 주차는 유료이고, 공간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법무법인 지평지성 홍보기획팀 Tel : 02)6050-0799, email: sbl@js-horizon.com

오시는길



대한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TEL : 02-6050-3114 FAX : 02-6050-3400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시청역 2번출구 삼성본관방향 5분거리
-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출구 YTN 방향 5분거리
- 지하철 4호선 회현역 5번출구 남대문 방향 5분거리

(업무동향)

미국의 퀄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지평지성은 미국의 퀄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7월 23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업체인 퀄컴에 국내 휴대전화의 핵심 부품 제조업체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인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퀄컴측은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정위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퀄컴, 공정위 과징금 2천600억원 납부(2010. 3. 5.)
- 전자신문 - 공정위, 퀄컴에 공식 의결서 송달, 법정공방 본격화(2010. 1. 18.)
- YTN경제 - 퀄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2009. 7. 23.)
- 서울경제 - 공정위, 퀄컴에 사상최대 2,600억 과징금(2009. 7. 23.)

[담당변호사]



박동영 대표변호사



조용환 대표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송한사 변호사

JS-Horizon



이병주 변호사



공수한 미국변호사

(업무동향)

프랑스 금융기관들이 제기한 워런트소송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항소대리인으로 선정

지평지성이 프랑스 금융기관들이 제기한 워런트소송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의 항소대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AMCO는 대우그룹 워크아웃 당시 워크아웃협약에 구속받지 아니하는 해외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서 워런트 교부를 약속한 바 있는데, 대우그룹이 조기에 정상화되자 워런트를 교부받은 해외채권자들과 KAMCO 사이에 워런트 교부 조건 및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 캬코, 대우 해외채권단과 100억원대 소송(2010. 2. 22.)
- 한국경제TV - 캬코, 대우 해외채권단과 100억원대 소송(2010. 2. 22.)
- 파이낸셜뉴스 - 캬코, 대우 해외채권단과 100억원대 소송(2010. 2. 22.)

[담당변호사]



박동영 대표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배성진 변호사

JS-Horizon

(업무동향)

미래에셋증권 및 대신증권 SPAC 설립 법률자문 제공

지평지성은 미래에셋증권의 SPAC 설립 관련 법률자문과 대신증권의 SPAC 설립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PAC이란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설립돼 기업공개(IPO)를 통해 M&A 자금을 마련한 후, 우량 비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기업가치 상승이익을 투자자에 환원시키는 구조의 명목회사입니다.

[관련자료]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의 도입(채희석 변호사)(뉴스레터 제13호. 2009. 10.)

[관련기사]

- 한국경제 - 미래에셋 스펙, 상장 첫날 상한가 (2010. 3. 12.)
- 파이낸셜뉴스 - 대신證 'D-ONE 스펙' 등기신청 완료(2010. 3. 1.)
- 뉴시스 - 미래에셋증권,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설립(2009. 12. 21.)

[담당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채희석 변호사



이은영 변호사

JS-Horizon

(업무동향)

인크레스코(주)를 대리하여 중학지구 매도거래 종결 업무 수행

지평지성이 서울 중학지구 4,500억 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거래에서 인크레스코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중학지구 매도거래 종결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중학동 사업은 한성인베스트먼트(한성자동차) 대주주인 홍콩 레이싱홍(李星行·Lei Shing Hong)그룹의 총수 C.K.라우(Lau) 회장이 진행하고 있는 업무용 빌딩 개발사업으로 지난해 10월 국내에 설립한 시행사 치넛코리아를 통해 인크레스코로부터 2,700억 원에 중학동 부지를 인수하였습니다.

중학동 오피스빌딩 개발사업 시행사인 중학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이번 금융회사 간 4,500억 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을 통해 업무용 빌딩 개발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 머니투데이 - 중학지구 4500억원 PF 완료(2010. 3. 3.)

[담당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이태 변호사



최수진 변호사



구상수 공인회계사

JS-Horizon

(업무동향)

현대엠코(주)의 캄보디아 프놈펜 오피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법률자문

지평지성은 현대엠코 주식회사의 캄보디아 프놈펜 오피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위한 2,500만 달러 조달업무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3만 1074m²(9,400여 평)의 대지에 지상 22층·지하 4층의 고급 오피스를 짓는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착공되었으며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머니투데이 - 현대엠코, 프놈펜 PF 2500만弗 조달 완료(2010. 3. 3.)

[담당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



김이태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Kent Wong
호주변호사



구상수 공인회계사

JS-Horizon

(업무동향)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국제특허분쟁 지원사업자 Pool에 선정

지평지성은 3월 8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2010년 해외 특허 리스크 대응 및 국제특허분쟁 예방 컨설팅 사업수행전문기관 풀(Pool)'에 선정 되었습니다.

본 컨설팅 풀은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해외 특허리스크 대응 및 국제특허분쟁 예방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평지성은 향후 1년 동안 사업수행전문기관 풀(Pool)에 포함되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특허 및 기술 라이선싱 협상 및 계약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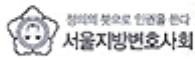
[관련링크]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지평지성,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아이티 재난 구호성금 전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2월 26일, 대규모 지진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티 복구를 위해 임직원들이 모금한 구호성금 1,000만 원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지평지성이 전달한 기부금은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인 사단 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전달되어 아이티의 긴급구호활동 및 지진피해 복구 재건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승수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 라이선싱 계약법' 강의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

지평지성 IP·IT팀의 최승수 변호사가 2010학년도 1학기에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 라이선싱 계약법'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평지성 단신)

이은우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제도기획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은우 변호사)

2010. 3. 2. 지평지성 IP·IT팀의 이은우 변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의 제도기획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대책과 중·장기 건강보장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는 보건학·사회복지학·경영학·경제학·법학·의학·간호학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45인으로 구성되며 제도기획·지불제도·보장성·재정·평생건강·장기요양 등 6개 분과위로 나눠 33개의 핵심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은우 변호사가 위원으로 선임된 제도기획 분과위원회는 '건강보장 미래발전 모델 구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도기획 분과위원회에는 문창진 CHA 의과학대학교 교수, 박경돈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안태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강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이해종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 본부장, 공형식 공단 기획상임 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매일경제 - 건보공단,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발족(2010. 3. 2.)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이행규, 채희석, 이은영 변호사, BFL 2010년 1월호에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Fund)의 설립 및 등록 관련 실무상 제문제' 공동 기고



(좌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행규 변호사)

(중 : 법무법인 지평지성
채희석 변호사)

(우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은영 변호사)

지평지성의 이행규, 채희석, 이은영 변호사가 그간의 PEF 설립 및 등록 관련 업무 경험을 집대성하여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에서 발간하는 Business Finance Law 2010년 1월호에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설립 및 등록 관련 실무상 제문제'라는 논설을 공동 기고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BFL 제39호(2010. 1.) -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의 설립 및 등록 관련 실무상 제문제

JS-Horizon

(영입인사)



김영규 변호사

ykkim@

js-horizon.com

□ 학력사항

- 경남 진주고등학교 제 52 회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82 학번)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헌법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헌법전공)
-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국제통상법 박사)

□ 경력사항

- 제 34 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 24 기 수료
- 창원지방법원 판사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중국 칭화대학교 법과대학원 방문학자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변호사 개업 (서울회)
- 법무법인 한승 (현 법무법인 총정) 구성원변호사
- 법무법인 한승 (현 법무법인 총정) 상해대표처 대표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김영규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그 후 10여년간 경향 각지의 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중국 북경으로 법관 연수를 가게 되었고 북경 칭화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방문학자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중국의 사회 및 문화 전반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탐구하는 한편, 중국 법률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현지에서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사들과 접촉하며 중국 법률계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중국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중국과 한국을 오고 가며 북경 정법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한편,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는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송무 건을 실무적으로 다루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중국사업을 스스로의 최종적인 비전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관련 업무를 시작하고자 2008년 3월부터 구 법무법인 한승(현 법무법인 충정 서초 사무소)에 입사하여 상해사무소에 상주를 하면서 중국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이번에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업은 제가 오래동안 꿈꾸어 온 일이며 상당기간 그에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다지고 준비해온 분야입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 관련 업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업무실적과 능력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대 중국업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희망하며, 그럼으로써 제가 평소 품어왔던 중국 사업의 꿈을 실제로 꽃 피워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영입인사)



김태형 변호사
thkim@js-
horizon.com

□ 학력사항

- 경기과학고등학교 제 10 회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96 학번)

□ 경력사항

- 제 49 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 39 기 수료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3월 2일부터 소송파트에서 일하게 된 신입변호사 김태형입니다. 훌륭하신 선배 변호사님들,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되어 영광입니다.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모두 마치니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커지고 일에 대한 자신감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만큼 손과 발로 부지런히 일하는 변호사가 되어 선배 변호사님들의 신뢰를 얻고 고객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영입인사)



장품 변호사
pjang@js-
horizon.com

□ 학력사항

-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제 47 회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98 학번)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전공 수료

□ 경력사항

- 제 49 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 39 기 수료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장품 변호사입니다.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3월부로 지평지성에 합류하였습니다.

법률가로서 첫 발을 내딛는 가슴 벅찬 자리를 지평지성 식구들과 나눌 수 있어 크나큰 행운이자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평범한 몰입이 비범한 재능보다 낫다는 믿음으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입인사)



김준환 변호사
jhkim2@js-
horizon.com

□ 학력사항

- 대덕고등학교 제 16 회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99 학번)

□ 경력사항

- 제 49 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 39 기 수료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10년 3월 2일부터 금융파트에서 근무하게 된 김준환입니다.

지평지성의 일원이 되어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영입인사)



이유경 변호사

ykleee@js-
horizon.com

□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00 학번, 조기졸업, 최우등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수료 (세법전공)

□ 경력사항

- 제 49 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 39 기 수료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하고 3월부터 금융파트에서 일하게 된 이유경입니다.

오랫동안 꿈꿔온 변호사로서의 삶을 지평지성에서 시작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사회에 공헌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로펌이라는 지평지성의 지향 대로 저 또한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훌륭한 선배님들을 본받아 열심히 배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평지성 가족분들과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영입인사)



음지현 자문위원
[jheum@
 js-horizon.com](mailto:jheum@js-horizon.com)

□ 학력사항

- 휘문고등학교 제 76 회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84 학번)

□ 경력사항

- 동원산업
- 동원증권
- 한국투자신탁운용
- 한국투자증권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자문위원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음지현 입니다.

저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주로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금융기관 근무 중 여러 가지 업무를 다양하게 하였고, 최근에는 주로 자원·에너지·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후변화협약 대책반의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8, 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강북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599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 bon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070-8275-4940 Fax : 856-21-264-344